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필요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7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6. 26.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u>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u>제1항 및 제5항에</u> ----- ----- -----.

-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등¹⁾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생략)

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경호를 하도록 하고,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일명 “신변안전조치”²⁾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법 제13조제3항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줄 것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신청’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 등의 ‘조치’에 앞서 선행되는 구조임.

안 제13조제5항 또한 동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신청이 선행됨이 타당하나, 법문상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신청’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오인될

-
-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범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범죄 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라’가 선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u>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u>직권이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 현행법은 신변보호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인 등이 관련된 공판 절차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의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험 부담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지 않아 여전히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 기간이 끝날 무렵에도 보복범죄의 발생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는 차이가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55조의2에서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의3에서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³⁾

○ 해외 사례로 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에서는 증인에게 위험이 현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존하는 한 증인보호조치가 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18 USC 3521(b)(1)⁴⁾).

문 의 처
02)6788-5065

4) “본 장에 따른 증인이나 잠재적 증인, 또는 증인이나 잠재적 증인의 직계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이 판단하기에 위험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법무장관은 해당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포함한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그 사람에게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 취한다.”(18 USC 3521(b)(1),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